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설치〉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0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신설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과 지원에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설치) ①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개발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현행	개정안
<u><신 설></u>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사항
<u><신 설></u>	제6조의4(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개발청장에게----- -. ----- ----- ----- -----.
③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개발청장</u> 은----- ----- ----- ----- ----- ----- --.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u>행정안전부장관</u>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u>개발청장</u> 은----- ----- ----- -----

현행	개정안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u>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관할</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 ----- -----. ③ <u>개발청장은</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개발청장 및 관할</u>----- ----- -----. 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가 종합계획¹⁾과 연도별 사업계획²⁾을 수립하고 행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³⁾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승인 등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고⁴⁾,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⁵⁾,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음⁶⁾.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은 2008년 발전종합계획 확정 이후 575건을 대상으로 하여 2025년까지 22회의 변경을 거쳐 약 31.9%의 추진율을 기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종합계획 확정 이후 변경 절차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수의 유관 부처 간 다층적인 협의 구조로 인해 변경 절차의 복잡성 및 사업 추진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2017년 최초 수립된 '교육·연구 시설' 계획이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변경 승인된 후, 다시 'E-커머스 물류단지 및 주거용지'를 거쳐 2025년 '문화공원(디자인클러스터)'으로 최종 확정되는 등 지속적인 계획 변경 과정을 겪은바, 2022년 기지 반환 완료 이후에도 2025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오염 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은 개발청 신설을 통해 다층적인 행정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의 신속한 정비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개발사업 및 지원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계획의 제출 및 사업 시행 승인권만을 부여받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회가 요구되

는바, 최종적인 확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계획 확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포항시 장성동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행정기관(24.5%)'보다는 '해당 지자체(45.8%)'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문제 해결의 핵심 방안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상력 발휘와 민·관·산·학의 결집(50.3%)'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바 있음⁷⁾.

개정안은 소관 부처를 개발청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구조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부재로 개발사업 및 지원사업에서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의견조정으로 인한 개발 지연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반환공여구역 부지 활용에 있어서 국방부의 공여구역 반환 및 처분권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에 있어서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만을 이양받고, 해당 부지의 반환 여부, 부지 처분권 및 토양 오염 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소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를 지님⁸⁾.

7) 구자문·안병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연구: 포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1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현재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여 해제 이전에 우선 매각권을 갖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⁹⁾, 공여해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정산한 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¹⁰⁾.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각 가격 산정 방식 및 대금 분납 조건 등에 관한 양 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고¹¹⁾, 개정안은 이때 소요되는 매입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개발청으로 이양하지 않는바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¹²⁾.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10)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1) 이강석,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활용계획분석과 개선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

또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 및 활용 목적에 따른 정화 수준에 관하여 국방부와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이 장기간 지속되고¹³⁾ 개발청은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후적인 권한만을 이양받은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지 반환 협의 및 해당 부지의 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을 감안한다면 개발청 체제로의 전환만으로는 정비사업의 지연과 관련된 입법 취지 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있음.

셋째, 중앙행정기관 설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의미하고¹⁴⁾, 중앙행정기관의

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이남석,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대한정치학회, 2018.

1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설치요건으로는 업무의 독자성·계속성, 업무의 성질·양, 기존행정기관과의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¹⁵⁾.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자성·계속성, 업무의 성질·양으로 보아 기존 기관의 개편으로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신설되는 개발청의 소관 사무가 현행 행정 체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에 따른 실익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 1개과(균형발전진흥과)에서 해당 업무를 이미 수행중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개발청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참고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현황

□ 종합계획 개요

-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 (대상/기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08년~’30년
 - * 공여구역주변지역 165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 (규모) 575건, 50조 9,426억원(국비 4조 9,298*, 지방비 6조 9,227, 민자 39조 901)
 - * (국비) 행안부 3조 4,186억원(구 안전처 314억원 포함), 타부처등 1조 5,112억원
- (주요사업) 도로, 공원, 문화복지, 산업, 관광, 기반시설 등 확충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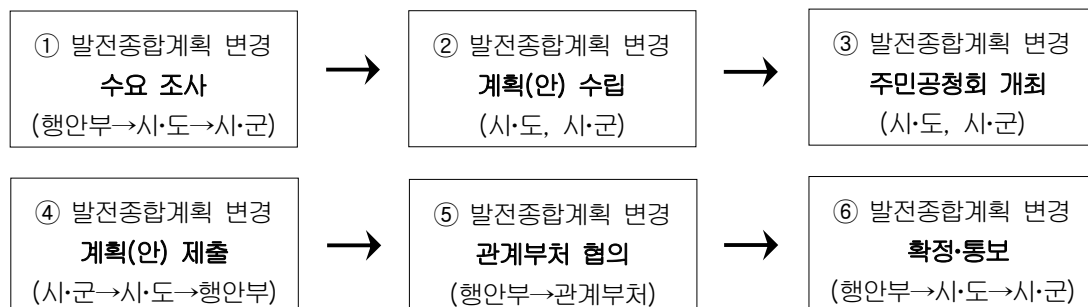
□ 국비보조율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80%까지 국비보조 가능하나 「보조금법」에 의거 국비 50% 지원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60~80%(공원, 도로, 하천 한정)로 국비 보조 가능하며, 국비 평균 67% 지원

□ 추진경과

- 「미군공여구역법」 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25년까지 발전종합계획 대비 31.9%인 총 16조 2,661억원 투자

□ 발전종합계획 변경 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발전사업 추진경과

- '17.10.: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교육·연구시설 → 안보테마관광단지)
- '20.07.: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 '20.09.: 정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의정부시 포함)
- '20.09.: E-Commerce 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MOU 체결
- '21.03.: 물류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21.03.: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안보테마관광단지 → E-커머스 물류단지, 주거용지)
- '21.07.: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의정부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계획 포함
- '21.12.: 발전종합계획 확정(안보테마관광단지 → E-커머스 물류단지, 주거용지)
- '22.02.: 기지 반환
- '22.05.: 문화재 지표 조사 및 토양오염 정밀 조사(농어촌공사)
- '22.10.: 물류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 '23.03.: 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05.: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E-커머스 물류단지 ⇒ 문화공원(디자인클러스터))
- '23.05.: 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3.11.: 국가물류기본계획 제외 협의 완료(국토교통부)
- '24.04.: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국비 반영 가능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협의)
- '24.05.: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24.08.: 기획재정부 협의(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협의_의정부, 동두천, 파주 3개 시부단체장 공동 대응)
- '24.09.: 행정안전부 협의(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협의_의정부, 동두천, 파주 3개 시공동 대응)
- '24.11.: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4.12.: CRC 기존건축물 존치 협의(16개 동 존치 예정)
- '25.01.: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 신청
- '25.04.: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 '25.04.: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용역 착수
- '25.11.: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 본부지: E-커머스 물류단지 제외, 동측부지: 농업복합시설 조성사업(신규 반영)
- '25.12.: CRC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처분사전통지서(市→주미단)

※ 자료 : 경기도청

□ 위치도

